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45
----------	-----

제출년월일: 2000. 2. 2.

제출자: 파주시장

☐ 개정이유

-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의 확대 조정을 통한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한편
- 현행 공무원 복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무원의 복리를 증진코자 함.

☐ 주요골자

- 경조사(사망 및 탈상)특별휴가 대상 확대(안 제23조제1항 별표 3)
- 경조사 특별휴가시 휴가기간중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안 제24조)
- 여성보건휴가 대상을 매 생리기에서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매월 1일로 확대(안 제23조제3항)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 대한 육아시간 신설(안 제23조제4항)
-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실시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재직기간중으로 명시(안 제23조제7항)
- 조기퇴직 경력직공무원 및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고용직공무원에게도 퇴직준비휴가 부여(안 제24조)

☐ 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 내지 제22조
-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동법제66조의2
-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8조
-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3조

☐ 예산수반사항: 없음

☐ 기타참고사항

-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중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매 생리기마다 1일의”를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로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종전 제6항)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하며, 동조제9항(종전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⑨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경 조 사 별 휴 가 일 수 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7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 비 고: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의 범위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2)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3) 직계존속의 범위
- 가)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뿐 아니라 외조부모 및 외증조부모 포함.
 - 나)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 다)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공가)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 ----- -----기간의----- -----.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5. <u>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u>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5. <u>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u> ----- -----
6.~8. (생략)	6.~8.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생략)	제23조(특별휴가) ①(현행과 같음)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 -----
<신설>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④~⑤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 -----재직기간중에----- ----- -----.
⑦ (생략)	⑧ (현행과 같음)
⑧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

개 정 안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생략)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배우자(치)	1
사망	배우자	7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자녀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3

개 정 안

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현행과 같음)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

-----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회갑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1
출산	(현행과 같음)	1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현 행

구분	대 상	일수
탈상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비고: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후에 실시할 수 있다.

3) 직계존속의 범위

가) (생 략)

나)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친생부모 포함

<신 설>

개 정 안

구분	대 상	일수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1) -----
-----2인의 범위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
-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직계존속의 범위

가) (현행과 같음)

나) -----
-- 양부모와 친생부모 --

다)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